

서울남부지방법원

지 급 명 령

사 건 2018차전 125980 대여금

채 권 자 박군식 (670605-1068017)
서울 구로구 디지털로 288 (구로동, 대룡포스트타워1차) 1903호

채 무 자 1. 윤경미 (630811-2055716) 2018.6.20. 송달, 2018.7.5. 확정
의왕시 현충탑길 40-14 (고천동)
2. 김진연 (890713-1214410) 2018.7.2. 송달, 2018.7.17. 확정
의왕시 현충탑길 40-14 (고천동)

청구취지와 원인 별지와 같다.

채무자들은 채권자에게 별지 청구취지 기재에 따른 금액을 지급하라.
별지 독촉절차비용은 채무자들이 부담한다.
채무자들은 이 명령이 송달된 날로부터 2주일 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2018. 5. 23.

사법보좌관 한동욱



정본입니다.
(채무자 윤경미, 김진연 에 대한 강제집행을 실시하기 위한 것입니다.)

지급명령 확정 당시 주소는 아래와 같습니다.

채 권 자 박군식
서울 구로구 디지털로 288 (구로동, 대룡포스트타워1차) 1903호

채 무 자 1. 윤경미
의왕시 현충탑길 40-14 (고천동)
[송달장소] 과천시 교육원로 41 (갈현동, 보광사)

2. 김진연
의왕시 현충탑길 40-14 (고천동)
[송달장소] 의왕시 현충탑길 40-14 (고천동 491-7)

2018. 7. 19.

법원주사 최재철



- ※ 1. 채무자가 위 기간 이내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이 지급명령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청 구 취 지

채무자들은 연대하여 채권자에게 아래 청구금액 및 독촉절차비용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구함

1. 금 21,542,686 원
2. 위 1항 금액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이 송달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 독촉절차 비용 90,000 원
(내역 : 송달료 81,000 원, 인지액 9,000 원)

청 구 원 인

1. 채무자(김진연)는 채권자가 운영하는 회사의 직원으로 재직중 채무자(김진연)가 채무자 부친(김용호)의 제2금융권 채무를 급히 갚아야 한다고 간곡히 부탁하여, 2017년 11월 3일 해당 금액(22,929,902원)을 제2금융권에 입금하고, 차용금액을 분할 상환키로 하였습니다. 단, 채무자가 채권자의 회사에 정상 재직하는 경우를 조건으로하였고, 퇴사시에는 일시 상환키로 각서 하였습니다.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채무자(김진연)의 모친(윤경미)를 연대보증인으로 차용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2. 그러나, 2018년 2월중에 채무자(김진연)이 채권자의 회사에서 업무상횡령 등으로 파면되었습니다. 차용계약에 따라서 미상환 차용금의 원리금에 대하여 일시상환을 최고(2018년 3월 초)하였고, 채무자(김진연, 윤경애)는 4월 말일까지 변제할 것을 약속하였으나, 변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3. 따라서 채권자는 신청취지와 같은 대여금과 소정의 이자율, 지연이자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받고자 본 신청에 이른것입니다.